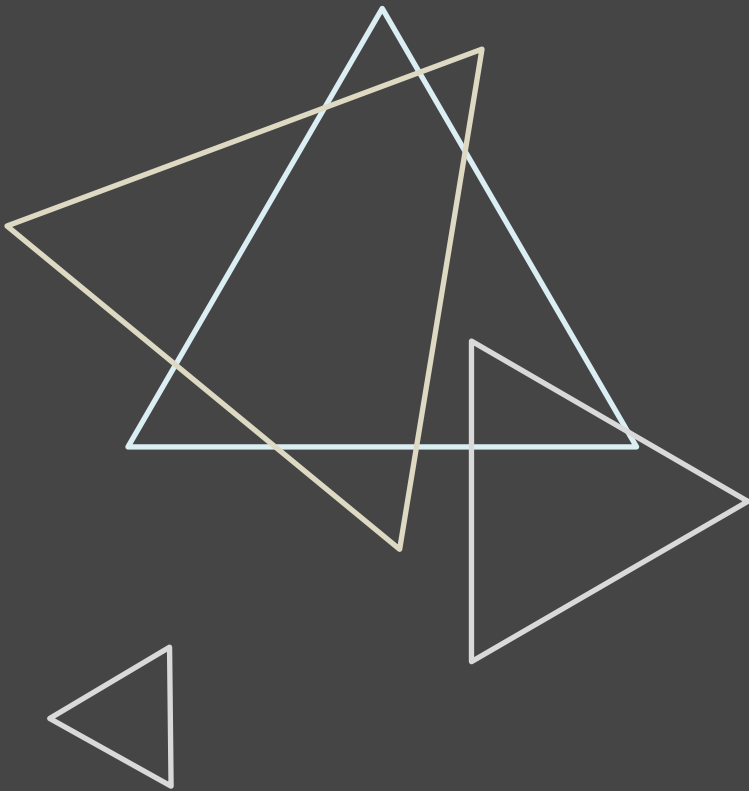


청소년 수련시설의 비정규직 수련담당 강사 자격에 관한 개정안

학생권익위원회



INDEX

- 입법취지
- 실태보고
- 입법안 주요골자



입법취지

태안 고교생 실종사고 해병대캠프 교관 자격미달 '아르바이트생'

2013-07-19 14:11:29

학생들을 인솔하던 '교관' 중 일부는 인명 구조 자격증도 없는 등 교관 자격에 못 미쳤다. 실제로 이들은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소홀했으며 학생들이 물에 빠져 구조요청을 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국 인명사고까지 일으켰다.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실종사고는 인재?... "알바생이 교관 역할"

황준현 태안 해양경찰서장은 19일 해병대 캠프 실종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관 32명 중 인명구조사자격증 소지자가 5명, 1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 5명, 2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가 3명이었다. 그런데 일부 교관은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였다"라고 밝혔다



입법취지

32명 중 13
명?

구조요청만?

사고 해역은 **수영금지구역**

이러므로:

사고발생

문제점

- ① 현재 수련기관의 비정규직 교관은 생명에 직결되는 활동에 대한 자격증 없음. 즉, 자격미달에 해당.
- ② 대부분 수련기관의 비정규직은 장소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



실태조사

<관련 자료1> 출처 -알바천국 라이프가드

일당 10~11만원 / 라이프가드(인명구조요원)-대천수련원

대천수련원

모집마감일 2013년 9월 3일(화) **마감된 공고리면!**

담당자명 김재오

연락처 H.P : 010-8209-8855

고용형태 :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경력 : **무관**(신입+경력)

예체능 레포트 > 수련원, 수영강사, 래프팅강사, 안전요원, 교관, 레크레 미션강사

지원방법

이메일지원

전화후 방문 방문접수 팩스 우편



주요골자

◇"강사 매일 바뀌어 우리도 불안"

이날 오후 경기도의 한 유스호스텔 1층 로비는 적막강산이었다. 복도와 식당 모두 불이 꺼져 있었다. 사무실에 있던 원장은 "6월 이후에는 단체 손님이 거의 없다"면서 "전기료도 안 나온다"고 한숨을 내쉬

성수기 : 1학기, 특히 4~6월
비수기 : 그 외, **문을 닫는다**

그러나 보다 이 시설들은 강의 석권을 고층미인 유지디자인이 맞지 않는다며 교관들을 불쌍(甘肅) 주고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간 수련원에서 10년간 근무한 A씨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거나, 자격증 없어도 경력이 많은 사람을 팀장으로 팀을 꾸려서 여러 시설을 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팀장을 맡은 교관이 팀원 대부분을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조달한다는 점이다. 하루 일당 4만~5만원을 준다고 급히 채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S유스호스텔 원장은 "2박 3일 일정인데 첫날 보이던 애(교관)가 다음 날 다른 애로 바뀌어 있더라"며 "우리도 어떤 애가 와서 학생들을 맡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주요골자

청소년 활동 진흥법

현행	개정문
<p>제19조(수련시설 운영기준)</p> <p>① 수련시설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 안전,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수련시설 운영기준)</p> <p>① 수련시설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 안전,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비정규직 고용 시 1 주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는 특정 활동은 그에 따른 자격증을 필수로 한다. 이때, 특정 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위반 시 수련기관의 운영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p>



실태조사

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9조(사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련시설 설치, 운영의 활성화 및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을 시범수련시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시설, 설비내용이 우수하고 수련거리의 운영에 모범이 되는 수련시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발 보급하는 수련거리의 시범적용을 담당할 수련시설
 3. 그 밖에 특별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이하 "시범수련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수련시설에 우선하여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업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⑤ <신설> 수련시설에서 단기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 수상 활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상 인명 구조 자격증을 필수로 한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